■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[별지 제3호서식]

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
([ ] 신혼부부 Ⅰ 전세임대 지원자, [ ] 신혼부부 Ⅱ 전세임대 지원자)

접수번호	

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	전화번호	휴대전화(0) -	집전화( ) -	
혼인 및 출생신고일	① 혼인신고일(재혼포함)			년 월 일
	② 자녀 출생신고(입양신고)일(주민등록등본 기준)			년 월 일
신청순위	[ ]1순위 (혼인7년이내, 유자녀)		[ ]2순위 (혼인7년이내, 무자녀 또는 예비신혼부부)	
주택 및 자산현황	[ ] 무주택	[ ] 자산 및 자동차(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 이하)		
	<작성요령 및 유의사항> 1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. 2.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.			

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시장(군수·구청장) 귀하

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(갱신계약 포함)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.

□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(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 등에서 작성)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	평가	평점
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	가.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나.차상위계층	3점 2점	( )%	( )점
② 자녀의 수(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한함)	가.3인이상 나.2인 다.1인	3점 2점 1점	( )인	( )점
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(인정회차 기준,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)	가.24회 이상 납입 나.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.6회이상 12회미만 납입	3점 2점 1점	( )회	( )점
④ 신청인의 당해시(특별시, 광역시 포함)·군지역에서의 연속거주기간	가.3년 이상 나.1년 이상 3년 미만 다.1년 미만	3점 2점 1점	( )개월	( )점
⑤ 장애인 등록 여부	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(신청인 포함)	2점	등록증 교부여부 (o , ×)	( )점
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(배우자 직계존속 포함)	65세이상 직계존속(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)부양	1점	부양여부 (o , ×)	( )점

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.

총점	점	소속		확인자	(인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